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0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서준오, 강석주, 김영철,
김원태, 도문열,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신복자, 아이수루,
, 유만희,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정준호,
한·신, 홍국표 의원(20
명)

1. 주문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의 업무 과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급식 안전과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단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급식 현안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으로 대체인력 채용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 과부하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교육부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1월, 각종 민원과 급식 만족도 등으로 휴직을 선택했던 젊은 영양교사가 복직 4일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의 업무 과부하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양(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급식 안전과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단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급식 현안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으로 대체인력 채용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 과부하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 전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 0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